

「2021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사업화지원(기업지원(전북))」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화지원사업 통합공고

탄소융복합산업 사업화를 제약하는 규제 해소로 신규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탄소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2021년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기업지원)(전북)」 사업화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특구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8월

(재)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장

개 요

- 공 고 명 :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화지원사업 모집공고
- 사업목적 : 탄소융복합제품 사업화를 제약하는 규제 해소로 신규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탄소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해 탄소산업 생태계 창출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도모
- 공고기간 : 2021. 8. 3.(화) ~ 2021. 8. 20.(금)
- 지원대상 : 전라북도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에 포함된 특구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54호)
- 지원기관 : (재)한국탄소산업진흥원,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 문 의 처 : 한은송 책임행정기술원, 최승준 선임연구원
(☎ 063-219-3561, ☎ 063-465-8438)
- 접수방법 : eshan@kcarbon.or.kr, choisj@komeri.re.kr(e-mail 접수)

1. 사업개요

- 사업명 :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기업지원)(전북)
- 사업목적 : 탄소융복합제품 사업화를 제약하는 규제 해소로 신규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탄소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해 탄소산업 생태계 창출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도모
- 사업기간 : 2021. 01. 01. ~ 2021. 12. 31. (12개월)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 지원기관 : (재)한국탄소산업진흥원,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 지원내용 : 책임보험, 시제품 제작, 마케팅, 특허/인증 등 지원

2. 지원내용 및 방법

- 지원내용 : 세부사업별 지원프로그램(책임보험 제외한 2개 이상 패키지로 신청)
 - 지원프로그램별 지원기관을 확인 후 신청

지원기관	구분	지원 프로그램	지원 내용	지원예산 (기업당)	기업 부담금
(재) 한국 탄소 산업 진흥원	보험	책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구사업자는 실증특례·임시허가 시행 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필수 가입 (지역특구법 제 88조 제2항, 제90조 제12항에 의거) - 보상한도 : 대인 최대 1.8억, 대물 최대 10억 이내 - 보험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 실증특례·임시허가 만료 전 임의로 책임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사고 책임은 100% 특구사업자에게 있으며, 특구사업자에게 지급한 보험료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div>	최대 15백만원 (보험료의 50%지원)	자부담 50% (필수)
	사업화 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증에 적용가능한 탄소융복합산업 기반의 제품 상용화 및 고도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 탄소융복합산업 기술을 반영하여 제품 개발 	최대 50백만원	
		마케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 실증사업별 세부 기술 및 제품 등에 대한 홍보물(미니어처, 동영상, 팸플릿 등) 제작비 지원 	최대 30백만원	자부담 10%
		특허/인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증 기반 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을 통한 인증 획득 지원 	최대 10백만원	

지원 기관	구분	지원 프로그램	지원 내용	지원예산 (기업당)	기업 부담금
(재) 한국 조선 해양 기자재 연구원	보험	책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구사업자는 실증특례·임시허가 시행 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필수 가입 (지역특구법 제 88조 제2항, 제90조 제12항에 의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한도 : 대인 최대 1.8억, 대물 최대 10억 이내 - 보험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 실증특례·임시허가 만료 전 임의로 책임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사고 책임은 100% 특구사업자에게 있으며, 특구사업자에게 지급한 보험료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div>	최대 15백만원 (보험료의 50%지원)	자부담 50% (필수)
	사업화 지원	특허/인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증 기반 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을 통한 인증 획득 지원 	최대 10백만원	자부담 10%
		해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증사업 중 탄소복합재 소형선박 제조 및 운항실증 과제에서 제작되는 실증어선 3종의 어선 선형검증 지원 	-	
		시험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용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 실증사업별 소재/제품의 성능검증을 위한 시험 및 분석 지원 	최대 3백만원	

- ※ 지원내용, 절차 및 지원금액은 전담기관의 정책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VAT) 미포함이며, 기업 별도 부담
- ※ 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지원프로그램 패키지 형태로 복수신청 가능(ex : 책임보험+시제품 제작지원+마케팅 지원)

○ 지원방법

구분	지원 프로그램	지원 내용
보험	책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임보험 가입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특구사업자별 수행역할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종류 선정 ② 보험사를 통한 책임보험료 산출 ③ 가입 및 계약체결 (가입비용의 50%지원, 최대 1,5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 보상한도 : 대인 최대 1.8억, 대물 최대 10억 이내 지원방법 : 특구사업자가 보험료 100% 선지급 → 책임보험료 지급청구서 제출 → 특구사업자에게 보험료 50% 지급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 보험금 보상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 부담금 발생 시 해당 특구사업자가 추가 부담금 부담 ※ 실증특례·임시허가 만료 전 임의로 책임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사고 책임은 100% 특구사업자에게 있으며, 특구사업자에게 지급한 보험료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div>

구분	지원 프로그램	지원 내용
사업화 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증에 적용가능한 탄소융복합산업 기반의 시제품 제작 지원 • 시제품 제작지원 진행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청기업-공급기업 매칭(필수, 공급기업 자율적 매칭) ② 관련 사업계획서 및 기타서류 제출 ③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지원대상기업 선정(지원금액 확정) ④ 사업 수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사업비는 결과평가 완료 후 지급) ⑤ 사업종료 후 결과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결과평가 ⑥ 사업비 집행 (공급기업에 사업비 지급) ⑦ 성과 및 만족도 조사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 회계정산 시 사업비 불인정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은 수행기업이 전액 부담 </div>
	마케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증사업별 세부 기술 및 제품 등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 지원 • 마케팅 지원 진행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청기업-공급기업 매칭(필수, 공급기업 자율적 매칭) ② 관련 사업계획서 및 기타서류 제출 ③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지원대상기업 선정(지원금액 확정) ④ 사업 수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사업비는 결과평가 완료 후 지급) ⑤ 사업종료 후 결과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결과평가 ⑥ 사업비 집행 (공급기업에 사업비 지급) ⑦ 성과 및 만족도 조사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 회계정산 시 사업비 불인정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은 수행기업이 전액 부담 </div>
	특허/인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외 지원분야관련 공급기관(기업) 자율 매칭 후 사업계획서 제출 (공급기관(기업)은 신청기업이 직접 선택 및 자율적 매칭) • 사업계획서 제출 시 특허사무소의 특허출원(등록) 종합의견서 제출 • 상시지원형태로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
	해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가능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복합재 소형선박 제조 및 운항실증 과제 참여기업 • 실증어선 3종 어선의 선형설계 검증
	시험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증사업별 실증제품 및 소재의 시험인증을 위해 시험 장비를 이용한 시험평가 지원 • 상시지원형태로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 회계정산 시 사업비 불인정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은 수행기업이 전액 부담 </div>

※ 지원내용, 절차 및 지원금액은 전담기관의 정책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①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자격대상 :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 지역특구법 제86조 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확인서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아 실증을 하려는 특구사업자(특구계획에 포함, 실증특례확인서 발급, 특구내 소재기업, 기관)

○ 신청 및 접수방법

- 아래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재)한국탄소산업진흥원 (www.kcarbon.or.kr) 사업공고 참조
 -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www.komeri.re.kr) 사업공고 참조

○ 제출서류 및 서류제출 방법

- 하단 제출자료 리스트를 1개의 파일로 통합 (순차적으로)
- 한글파일 원본 그대로 제출(상세기술서는 지원프로그램별 별도 제출 필요)

지원기관	구분	지원 프로그램	제출서류
(재)한국탄소산업진흥원	보험	책임보험	별도 공지 및 안내
	사업화 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1. 지원신청서 및 상세기술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2.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 3.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 1부
		마케팅 지원	4. 사업자등록증 1부 5. 재무제표 최근2년 1부
		특허/인증 지원	1. 지원신청서 및 상세기술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2.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특허 사전 검토 의견서 1부 (지식재산권확보지원 분야)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보험	책임보험	별도 공지 및 안내
	사업화 지원	특허/인증 지원	1. 지원신청서 및 상세기술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2.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특허 사전 검토 의견서 1부 (지식재산권확보지원 분야)
		해석지원	1. 지원신청서 및 상세기술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2.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 3.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 1부
		시험평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재무제표 최근2년 1부

※ 견적서는 지원프로그램 중, 시제품제작 지원의 경우만 해당

②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대상

- 전라북도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에 포함된 특구사업자

○ 신청제외대상

- 규제자유특구 특례 적용 실증품목이 아닌 사업신청은 선정에서 제외
-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 하고 있는 경우
-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사업 신청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내용에 부적합한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되었거나, 타 기관의 지원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기술(부품)과 동일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과제 수행에 최대 5개월 이상 소요되는 과제의 경우 사업 성과 측정 및 결과보고에 지장을 초래하여 제외시킬 수 있음
- 기타 본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볼 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 되는 기업

③ 유의사항

○ 시제품제작 지원의 경우, 제작에 필요한 물품 리스트를 결정하여 견적서 첨부

- 첨부한 견적서의 금액과 신청서에 작성한 사업비(예상 소요비)가 일치해야함

○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시 유의 사항

- 본 사업계획서 양식을 준용하되, 세부 추진계획 작성은 자율성 부여
- 제출된 서류 및 신청서가 허위이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강제 협약해지 됨을 알려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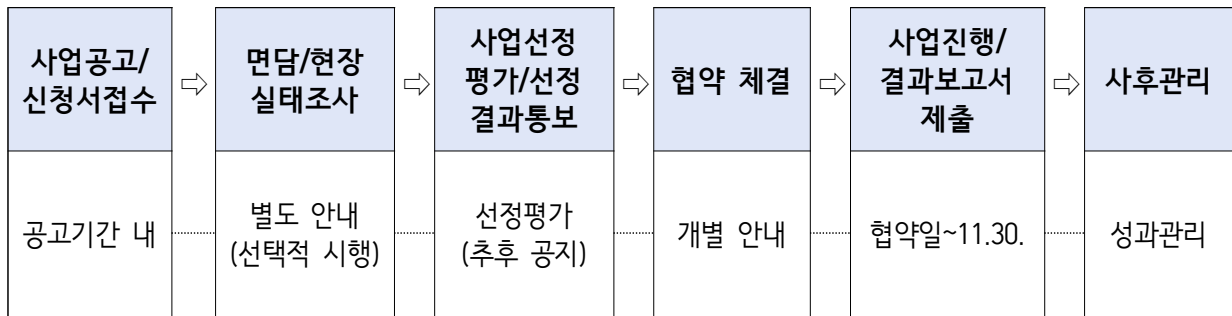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 서류를 기준으로 선정평가를 통해, 수혜기업을 선별

-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

4 지원신청 및 평가 추진일정

○ 추진일정



※ 선정평가 : 서면 또는 발표평가 등과 관련

○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프로그램에 따라 각 형태로 지원

5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 예비진단(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 사전검토 포함) →
면담/현장실태조사(필요시)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기준 :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기반으로 서면평가를 통해
평가점수 반영, 최종 수혜기업 선정
- 선정평가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지원금액, 기본방향,
사업내용, 공급기업 변경 등 일부 내용을 평가서에 제시한 후
조정할 수 있음

6 접수 및 문의처

지원기관	담당자	연락처 (전화번호 / E-mail)
(재)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은송 책임	063-219-3561 eshan@kcarbaon.or.kr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최승준 선임	063-465-8438 choisj@komeri.re.kr